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6

# 서 울 행 정 법 원

## 제 3 부

## 판 결

사 건 2014구합679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22.

## 주 문

1. 피고가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8,365,570원, 농어촌특별세 3,836,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25,000주의 72%인 18,000주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인상태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6

서, 원고가 2009. 12. 15. C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주식보유비율이 20% 증가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5.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증가한 주식의 비율인 20%를 곱하여 산출된 1,165,135,72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38,365,5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836,550원(가산세 포함) 합계 42,202,1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9.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1993. 8. 6.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당시 구 상법의 설립조건(발기인 7명)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9. 12. 15. C가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C로부터 그 명의를 회복한 것이다. 결국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주식의 명의만을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6

**4.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에 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6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C와 원고는, 2009. 12. 15.자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증서에는 'C는 ㈜B의 주식 5,000주를 1993. 8. 6. 최초 법인 설립 당시 법인설립조건(이사 및 발기인수)을 갖추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관해온바 2009. 12. 15.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소유자인(A)에게 명의개서코저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발급된 C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②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이전에 같은 직장을 다녔던 인연이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이름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증인이 회사설립을 위하여 출자를 하거나 5,000주의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주식회사 설립비용은 실질적인 1인 소유주인 원고가 모두 출자하였고, 증인을 포함한 나머지 발기인 및 주주들은 회사 설립을 위하여 자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 이외에 이익배당이나 주식배당을 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최초 자본금은 2억 원 정도였고, 증인이 퇴사할 무렵에는 연매출액이 70~80억 원 정도 되었는데, 증인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퇴사할 때에는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점, ③ 달리 위 증언을 뒤집고 C의 이 사건 주식 인수 및 양도와 관련하여 어떤 대가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실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6

원고 이외의 발기인들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로서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원고 이외에 현재 남아있는 주식 명의인들또한 모두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C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식의 명의인들이 원고 또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배당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회사는 2011년도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2012년 및 2013년에 결산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각 결산배당 당시 명의상 주주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4명이었으나, 총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모두 원고에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실제 소유자로서 2011. 9. 16.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C로부터 그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11. 9. 16.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6-26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